

# 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 외 26명
- 의안번호 : 제1548호
- 발의일자 : 2024년 2월 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산림문화·휴양 지역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산림문화·휴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마.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제정안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·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제정(시행)된 바 있음.
-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산림문화·휴양 진흥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서울시는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와 공원여가사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<sup>1)</sup>
- 본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향후 자연휴양림, 산림치유 및 숲길 사업 등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- 특히, 지난해 10월 개정<sup>2)</sup>된 법에서는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‘산림치유정책’, ‘치유시설’을 정의하고 있고 ‘숲길’의 운영관리 측면에 관한

1) 자연생태과 : 자연생태기획(산림휴양, 자연휴양림, 치유의숲, 숲길, 둘레길, 등산로 등) 및 산림관리, 생태계 보전 등  
공원여가사업과 : 산림여가(산림복지, 유아숲, 숲해설, 서울둘레길) 등

2)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[시행 2024. 5. 1.] [법률 제19804호, 2023. 10. 31., 일부개정]

사항을 확대(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)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법 제22조의2(숲길의 종류)에 따라 ‘숲길’을 등산로, 탐방로, 트레킹길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세부적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5년마다 산림문화·휴양계획(지역계획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, 산림휴양, 산림치유 등 부분별 계획과 함께 자원 현황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바,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 현황 파악, 운영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-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<sup>3)</sup>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지속사업<sup>4)</sup>으로 계획 중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, 추후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법 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<sup>5)</sup>에서 위임된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.
- 최근 전국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‘불암산 힐링타운’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하여 산림여가공간<sup>6)</sup>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.

3)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: 사업기간(2019~2024.7.), 시범운영('24.8.~12.), 공식 개장('25.1.예정)

4) 자연휴양림 조성사업(안): 사업기간(2024~2026)

5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6) 불암산 힐링타운(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 42-3 등): 산림치유센터, 유아숲체험장, 철쭉동산, 서울둘레길 등